부천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

의 안 번 호	제389호
의 결 년월일	2009. 4. 6. (제151회)

· 제의년월일 : 2009. 3. 26.

제 의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 이유

부천시의회의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는 부천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규칙안을 발의하게 됨.

2. 주요 내용

가.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하며, 그 대상은 현직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임기 중에 사망한 자 중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되,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기로 함.(안 제2조 및 제3조)

나.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, 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어 총무, 의식, 재무 등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정함.(안 제4조 및 제5조)

다. 장례의 의식에 차질 없도록 의회장에 소요되는 장제비기준에 관한사항을 정함.(안 제8조)

3. 규칙안 : 붙임

부천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부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이라 한다)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부천시의회장(이하 “의회장”이라 한다)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회장의 범위)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.

제3조(의회장 대상자 및 심사·결정)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 중 부천시의회 사무국장 (이하 “사무국장”이라 한다)의 제청으로 부천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결정한다. 다만,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)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(이하“장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영결식의 방법, 일시, 장소,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
2.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

③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, 위원은 현직 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,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⑤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,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5조(집행위원회) ① 원할한 의회장의 진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

집행위원회를 둔다.

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,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.

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집행위원회는 총무, 의식, 재무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.

⑤ 집행위원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간사)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.

제7조(장의기간 등) 의회장의 장의기간, 장의절차, 장의의식 등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「건전가정의례준칙」을 준용한다.

제8조(장의비용)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 금액은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.

제9조(조기게양) 의회장일에는 의회 청사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.

제10조(장의공고) 장의위원회가 구성되고, 의회장으로 결정되면, 장의 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, 신문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〕

장제비 기준

사 항 별	규 격	수 량	비 고
신 문 공 고	3단 15㎝	1개사	지방일간지
영결식장 설치	o 가설물 가로 6m, 세로 3m, 높이 4m 내외	1식	
영구차 및 유가족 운송차	영 구 차 대형버스	1대 1대	1일간 (장례식장→영결식장→장지)
헌화용 꽃 및 근조리본 등 가. 헌 화 나. 흉 화 다. 국 화 라. 근조리본 마. 장 갑 바. 넥 타 이 사. 영구차 리본	 특 대 대 특 대 대 헌화용 흑 색 백 색 흑 색 대 형	 1개 15개 1개 29개 300개 300개 50족 50개 1개	 장의위원장용 유족 및 집행위원장용 장의위원장용 집행위원장 및 위원용 조문용 조문용 장의위원 및 종사원용 장의위원 및 종사원용
조 화	대 형(3단)	2개	의 장 명 의 1개 의원일동 명의 1개
안 내 문 인 쇄	모조10절 180g/㎡	500부	
기 타 가. 조 악 대 나. 경호 및 경비	 차 량	 1대 2팀이내	 필요시 필요시

※ 위 기준은 장의기간 및 의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